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동향 과 기업 대응 전략

I. 개관

탄소중립 정책은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산업정책, 통상정책, 공급망 전략과 밀접하게 결합되면서, 기업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체계를 규율하는 핵심 법률로서, 향후 개정 방향에 따라 기업의 규제 부담 및 대응 전략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최근 탄소중립기본법을 둘러싼 논의는 국가의 감축목표 설정 방식, 중장기 이행체계의 적정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법적 통제 가능성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결정, 국제 재판기관의 권고적 의견, 국회 개정안 논의를 중심으로, 동 법의 주요 구조와 개정 흐름, 그리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살펴봅니다.

II. 탄소중립기본법의 주요 내용

1. 법의 구조와 정책 체계

탄소중립기본법은 “비전-전략-목표-이행체계-분야별 시책-이행 확산-재정지원”의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비전은 “2050 탄소중립과 환경·경제의 조화”로 정리될 수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목표로 국가전략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탄소중립기본법은 개별 정책을 단편적으로 나열하는 법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중장기 목표를 먼저 제시한 뒤 이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본계획과 세부 시책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와 전략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구체화되며, 그 수립 단위는 국가·시도·시군구로 구분됩니다. 이는 탄소중립기본법상 이행체계가 중앙정부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는 다층적 정책 구조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2. 분야별 시책

탄소중립기본법은 정책 영역을 크게 온실가스,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중립기본법이 단순한 배출 감축법이 아니라, 감축과 적응, 산업전환과 형평성, 녹색산업 육성을 포괄하는 종합 정책법이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부문에서는 그 시책으로 ▲ 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인지 예산제도, 배출권·목표관리, 탄소중립 도시, 지역 에너지 전환, 녹색건축·교통, 탄소흡수원 및 CCUS, 국제 감축사업, 종합정보관리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 적응 부문에서는 ▲ 감시·예측, 국가·지방·공공기관 단위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지역 기후 대응, 물 관리, 녹색국토, 농림수산 전환, 적응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정의로운 전환 부문에서는 ▲ 사회안전망, 특별지구, 사업전환, 자산손실 최소화, 국민참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센터 등이, 녹색성장 부문에서는 ▲ 녹색경제, 녹색산업, 녹색경영, 녹색기술, 조세제도, 녹색금융, 정보통신, 순환경제 등이 규율됩니다. 즉, 탄소중립기본법은 단지 “감축 목표를 선언하는 법”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정책 수단과 산업·재정·지역사회 차원의 실행 장치를 폭넓게 예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국가의 목표 설정 및 이행체계

탄소중립기본법상 국가의 목표 설정과 실행체계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 법 제2장에서는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중심으로 한 기본 구조가 제시되고 있고, 특히 제8조 제1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상 감축 비율은 40%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파리협정상 국가결정기여(NDC)를 반영한 것입니다. NDC는 각국이 스스로 결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이고, 우리나라는 2018년 배출량 727.6백만 톤 대비 40% 감축한 436.6백만톤 배출을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NDC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위 수치가 현재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그리고 각 부문별 세부 정책수단의 실행을 통해 구체화되는 구조를 갖습니다. 즉, 국가 감축 목표는 추상적인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법률상 계획과 위원회의 심의의결 체계, 개별 정책수단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행되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4. 최근 개정 논의의 기준

최근 개정 논의에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의 중요성이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학적 사실은 IPCC의 Assessment Report 등에서 제시되는 과학적 분석과 예측을 의미하고, 국제 기준은 전지구적 탄소예산, 전지구적 감축경로, CBDR/RC 원칙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최근 감축목표의 적정성 및 정합성을 둘러싼 논의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오늘날에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 과정 전반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감축목표의 수준뿐 아니라, 그 이행 과정의 형평성과 정당성 역시 함께 문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Ⅲ. 개정 동향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감축목표의 법적 통제 강화

최근 탄소중립기본법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더 이상 정책적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점차 **법적 통제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적 요소**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판례와 국제 재판기관의 권고적 의견, 그리고 국회 개정안 동향은 모두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결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0년 이후인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고, 해당 기간의 감축목표 역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인정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 이는 국가의 감축목표 설정이 더 이상 정책적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진 영역이 아니라, 기본권 보호와 세대 간 형평의 관점에서 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2. 국제 기준의 실질적 영향 확대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주인권재판소(IACtHR)의 2025년 7월 3일 권고적 의견과 국제사법재판소(ICJ)의 2025년 7월 23일 권고적 의견은 모두, 각국이 전지구적 탄소예산과 전지구적 감축경로를 활용하여 최소한 1.5°C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CBDR/RC 원칙 및 세대 내·세대 간 형평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ICJ 권고적 의견은 1.5°C가 과학에 기초하여 합의된 목표가 되었고, NDC 설정에 있어서 국가의 재량은 제한되며, NDC는 전지구적 감축경로를 반영한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1.5°C 목표 달성이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 “과학적 기준”과 “국제 기준”의 중요성이 한층 커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3. 입법 동향과 규제 구체화 가능성

입법 동향 역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과 관련하여 40건 이상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일부 개정안은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소영 의원안, 서왕진 의원안 등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을 고려한 2035년 감축목표와 2050년까지의 중간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향후 탄소중립기본법이 단순한 선언적 기본법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목표와 절차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4. 기업 대응 전략

이러한 개정 동향은 기업에 단순한 규제 강화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 국가 감

축목표가 보다 구체화되고 법적 구속력이 강화될 경우, 향후 개별 산업 및 기업에 부과되는 감축 의무, 배출관리 기준, 에너지 전환 부담 역시 보다 명확하고 강화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 차원의 탄소규제, ESG 공시 요구, 녹색금융 및 투자 기준과의 연계도 점차 강화될 수 있으므로, 기업으로서는 단순히 현행 규제를 준수하는 수준을 넘어, 중장기적인 정책 변화가 자사의 사업구조와 비용 구조, 투자 전략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기본법이 향후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절차를 직접 규율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경우, 기업의 대응 역시 사후적 규제 준수에 머물러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향후 개정안의 방향과 정책 집행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자사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고, 배출관리 체계, 에너지 조달 구조, 공급망 대응 전략, ESG 공시 및 투자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결론

탄소중립기본법은 더 이상 추상적인 정책 선언을 담은 기본법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의 목표 설정과 이행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규범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국제 재판기관의 권고적 의견, 국회 개정안 논의는 향후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체계의 정합성이 보다 엄격한 기준 아래 검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입법 정비와 정책 구체화가 본격화될 경우, 관련 기업들은 단순한 법령 모니터링을 넘어, **탄소중립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구조, 공급망, 에너지 조달, ESG 공시 및 투자 커뮤니케이션과 연계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ELPS는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규제 대응 자문, ESG 공시 및 관련 법률 리스크 사전 검토, 정책 연구 자문 등 탄소중립기본법의 집행 및 사법판단의 전 단계에 걸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김민제

mjkim@elpslaw.com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엘프스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